제168회 거창군의회

<정 례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0 ~ 26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0 ~ 2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 ~ 28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10 ~ 29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5
2010 ~ 3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26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통합망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종전 수행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보험료의 세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

- 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자
- 개정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

나.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 선정기준은 그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각각 제2조와 제3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함(안 제3조, 제5조).

다. 지원대상 세대에 직접 지급하던 보험료의 지원 방법을 공단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그 밖에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조, 제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아동복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본예산으로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5. 12. ~ 5.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들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군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400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 세대·장애인세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저소득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27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기능 6급 : 5% 이내(현행) → 7% 이내(조정 : 증 2%)

○ 기능 7급 : 14% 이내(현행) → 20% 이내(조정 : 증 6%)

○ 기능 8급 : 20% 이내(현행) → 24% 이내(조정 : 증 4%)

○ 기능 9급 : 29% 이내(현행) → 31% 이내(조정 : 증 2%)

○ 기능 10급 : 32% 이상(현행) → 18% 이상(조정 : 감 14%)

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5명

- 현행 : 473명(본청213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8명)
- 조정 : 478명(본청217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9명)

○ 기능직 정원 : 감 5명

- 현행 : 81명(본청44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8명)
- 조정 : 76명(본청40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반영

※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232,205,740원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갈음

(2) 입법예고(2010. 4. 24 ~ 2010. 5. 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기능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20% 이내	24% 이내	31% 이내	18% 이상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 이내	14% 이내	20% 이내	29% 이내	32%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생략)

4. 별정직공무원

(생략)

</td><td>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7% 이내	20% 이내	24% 이내	31% 이내	1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4.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td></tr>
</table>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20% 이내	24% 이내	31% 이내	1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45	274	14	122	57	65	49	39	147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11 (506)	230 (226)	8	65	16	49	34	34	140 (139)
4급	1	1							
4~5급	3	2		1		1			
5급	29	10	3	1		1	3	1	11
6급 이하 계	478 (473)	217 (213)	5	63	16	47	31	33	129 (128)
일반직+지도직 계	18			18	18				
5급 상당	4			4	4				
6급 상당	14			14	14				
일반직+연구직 계 (6급 상당 이하)	2	2							
별정직 계 (6급 상당 이하)	16	1		15		15			
연구직 계 (연구사)	3			2	2		1		
지도직 계 (지도사)	18			18	18				
기능직 계	76 (81)	40 (44)	6	4	3	1	14	5	7 (8)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28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기능

-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위 원 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당연직 :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장
  - 위촉직 : 군의회의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해당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국·공유지 임대 및 불용품 무상양여 등 시설비 등의 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소비 장려 등의 판로 개척

○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 장려

○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육성 참여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반환,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추경예산으로 확보(5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6. 9. ~ 6.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육성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위반한 때 또는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29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의 범위 및 구매 예외사항,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및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내기업 및 산·학협력 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지원, 친환경상품 관련정보의 제공,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와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 유공자 포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재무과(경리담당), 건설과(건설행정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6. 8. ~ 6.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관계 기관·단체, 관내기업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거창군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과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에 관하여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에 관한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군수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려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친환경상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학교법인
4. 종교단체
5. 체육단체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구매실적 평가)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9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생산·구매촉진 시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제3조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30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나. 회의개최,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해제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선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2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6. 1. ~ 6.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 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신 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생 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6조(운영규칙) (생 략)	제7조(운영세칙) (현행 제6조와 같음)